부설연구원(소)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- 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관리의 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05.4.1)
- **제2조(설립)** ①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학년도 말에 산학협력단에 설립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05.4.1)
 - ②연구소의 설립 신청은 해당분야 전임교원 7인 이상의 공동발의(3개 이상의 유관학과 교수가 참가해야함) 및 추천에 의하며, 해당 전임교원 소속 대학장(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연구과제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기관에서 설립을 명시한 사업단, 센터 등 은 본교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서, 예외로 한다.(2005.4.1)
 - ③산학협력단장은 신청 연구소의 설립여부를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 다)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〈개정 2005.4.1〉
 - ④설립허가를 받은 연구소는 본교의 정책 및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의 직제에 반영하지 않는 대학승인연구소의 자격을 얻으며, 대학승인연구소에는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〈개정 2005.4.1〉
 - ⑤대학승인연구소는 설립하여 매 2년마다 직제에 반영되는 법인승인연구소로의 승격을 신청할 수 있다. 이때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2년간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그 승격여부를 심의·결정한 다.〈신설 2005.4.1〉
- 제3조(규정) ①연구소는 반드시 해당 연구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며,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〈개정 2005.4.1〉
 - (2)연구원(소)의 규정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규정류관리규정에 따른다.
- 제4조(조직) ①연구원(소)에는 연구원(소)장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부원(소)장, 간사, 팀장 및 실장을 둘 수 있다. ②연구원(소)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.
 - ③연구원(소)에 전임연구원,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- **제5조(자격 및 임용)** ①연구소의 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〈개정 2005.4.1〉
 - ②연구소의 부소장은 전임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의 장이 추천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〈개정 2005,4.1〉
 - ③교내외 연구교원은 연구소의 장이 추천하여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한 후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〈개정 2005.4.1〉
 - ④교내외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의 장이 추천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〈개정 2005.4.1〉
 - ⑤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의 자격은 연구소의 장이 별도로 정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연구소의 장이 위촉할 수 있다.〈개정 2005.4.1〉

⑥전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.〈개정 2005.4.1〉

- 제6조(운영위원회) ①연구소에는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 되는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(다만, 외부인 사를 운영위원으로 포함하는 경우는 12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)〈개정 2005.4.1, 2007.10.1〉 ②위원장은 연구소의 장이 되고, 위원은 연구소의 장이 추천하여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한 후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〈개정 2005.4.1〉
 -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〈신설 2005.4.1〉
- 제7조(소집과 의결) ①각 연구원(소)회의는 원(소)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연구원(소)장이 소집한다.
 - ②연구원(소)의 회의는 연구원(소)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**제8조(사업시행)** ①연구소는 자체 사업계획서 및 실행예산서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되,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한 후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.〈개정 2005.4.1〉
 - ②연구소는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실시하여야 하며, 실시 후 그 결과 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〈개정 2005.4.1〉
- 제9조(회의록) 연구원(소)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**제10조(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)** ①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산학협력 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한다.〈신설 2005,4.1〉
 - ②매년 연구소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연구소의 존속여부를 심의할 수 있으며, 연구업무의 시정보완을 지시하고 연구업적 평가를 연구보조비 책정에 반영할 수 있다.〈신설 2005.4.1〈개정 2007.10.1〉

제11조〈삭제 2005.4.1〉

- **제11조의2(연구원(소)의 통합 및 폐지, 재산의 귀속)** ①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소를 통합, 폐지, 자격변경 등의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〈개정 2005.4.1, 2007.10.1〉
 - 1. 연구소의 활동실적이 부실할 때(연구소 평가결과 3년 연속 'D'등급 평가' 또는 '운영보고서 미제출 연구소')〈개정 2007.10.1, 2011.12.1〉
 - 2. 연구소의 사업이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
 - 3. 재정난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인정될 때
 - ②폐지된 연구소의 재산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.(개정 2005.4.1)
 - ③위 1호의 경우 법인승인연구소는 대학승인연구소로 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.〈신설 2007.10.1〉
 - ④대학승인연구소로서 프로젝트를 수행중인 경우 연구소 폐지를 유보할 수 있다.〈신설 2007.10.1〉
- **제12조(보고 및 관리감독)** ①연구소의 장은 산학협력단장에게 다음 각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〈개정 2005.4.1〉 1. 연구소유영보고서(학년도간 연구비 수혜사항 및 연구활동 실적)와 유영위원회 회의록 및 결산서를

- 다음 해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05.4.1)
- 2.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- 3. 연구소의 장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동의를 얻어 연구소 명의로 과제를 수탁(계약)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서 및 계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송부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다.(개정 2005.4.1)
- ②사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연구소를 관리·감독한다 (개정 2005.4.1)
- **제13조(재정)** ①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산학협력단 회계연도와 같다.〈개정 2005.4.1〉
 - ②연구소의 운영경비는 학술연구사업 수입금, 기타보조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하며, 본교 또는 산학협력 단은 필요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〈개정 2005.4.1〉
 - ③〈삭제 2011.2.25〉
 - ④〈삭제 2005.4.1〉
 - (5)〈삭제 2005.4.1〉
 - ⑥연구소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을 소속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 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〈신설 2005.4.1〉
 - ⑦각 연구소의 전임연구원, 초빙연구원, 특별연구원 또는 보조연구원 등의 급여는 연구소 자체경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〈신설 2005.4.1〉

제14조〈삭제 2005.4.1〉

- **제15조(연구소 평가)** 연구소 평가는 연구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하며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.〈신설 2007.10.1〉
- **제16조(장비 사용료 기준)** 연구소 장비사용료는 수익금 총액에서 60% 이내의 실경비(인건비, 재료비)를 지급하고, 실경비를 제외한 나머지(40%)는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.〈신설 2011.12.1〉

부칙(1996.5.1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준용) 연구원(소)의 형태에 준하는 유사 연구기관은 그 목적에 따라 위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 운영할수 있다.

부칙(1997.9.1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1998.3.1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0.9.1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5.4.1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기존 연구소는 본 규정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소 규정을 본 규정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. 종전의 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진행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부칙(2007.10.1)

제1조(시행일)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1.2.25)

제1조(시행일)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1.12.1)

제1조(시행일)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